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관 사무 및 명칭 변경,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 차관급 우정청 신설 등〉

■ 최민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881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관 사무 및 명칭 변경	2
2.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	11
3. 차관급 우정청 신설	19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최민희의원 등 14인
2. 발의연월일 : 2025. 04. 16.
3. 회부연월일 : 2025. 04.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및 방송에 관한 사무를 모두 아울러 관장하고 있음.

인공지능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자산으로서 인공지능 및 과학기술 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로 하고 방송에 관한 사무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하고 우정사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장관 소속으로 우정청을 두려는 것임(안 제19조, 제26조 및 제29조 등)

현행	개정안
장·실장·국장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조사, 심사·평가 및 홍보 등을 통하여 그를 보좌하는 보좌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 다만, 과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⑥ ~ ⑩ (생략) 제7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① (생략) ② 차관(제29조제2항·제34조제3항 및 제38조제2항에 따라 <u>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u>에 두는 본부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차장(국무조정실 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차관 또는 차장이 2명 이상인 기관	----- ----- ----- ----- ----- -----. -----. ⑥ ~ ⑩ (현행과 같음) 제7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 <u>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u>----- ----- ----- ----- ----- ----- ----- ----- -----. -----

현행	개정안
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 ⑤ (생략) 제10조(정부위원) 국무조정실의 실장 및 차장, 부·처·청의 차장·차관·청장·차장·실장·국장 및 차관보와 제29조제2항·제34조제3항 및 제38조제2항에 따라 <u>과학기술정보통신부</u>·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본부장은 정부위원이 된다. 제26조(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1. 2. (생략) 3. <u>과학기술정보통신부</u> 4. ~ 19. (생략) ② . ③ (생략) 제29조(<u>과학기술정보통신부</u>) ①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u>은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과학기술인력 양	----- ----- -----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정부위원) ----- ----- ----- ----- ----- -----<u>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u>----- ----- ----- -----. 제26조(행정각부) ① ----- ----- -----. 1. 2. (현행과 같음) 3. <u>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u> 4. ~ 19.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9조(<u>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u>) ① <u>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장관</u>----- ----- -----

현행	개정안
성,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호·정보문화, <u>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u>	----- ----- ----- <u>인공지능 진흥 및 산업, 통신·인공지능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u> ----- -----.

현행법은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호·정보문화,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현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관 사무 중 방송에 관한 사무, 우편에 관한 사무를 각각 삭제하고, 인공지능 진흥 및 산업 등 인공지능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면서, ‘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로 변경하려는 것임.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무에 인공지능 진흥 및 산업, 인공지능의 융합·진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인공지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¹⁾이 제정됨에 따라 인공

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인공지능과 관련한 시책의 개발 등 명실상부한 국가 인공지능에 관한 사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총괄하는 점 등을 반영한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음, ‘부’의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는 행정기관의 명칭은 그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를 표현하는 형태로 정해지는 것이 국민의 이용 편의나 책임행정 제고 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취지로 보임.

다만, 방송에 관한 사무의 삭제와 관련해서는 검토가 필요해 보임.

현재 방송에 관한 사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각각 분장하고 있는데, 그 배경을 살펴보면,

2013년 정부조직개편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당시 미래창조과학부)는 산업진흥 측면에서 유료방송(SO·위성·IPTV), 홈쇼핑PP, 일반PP를 소관하여 인력양성·기술개발·콘텐츠 제작지원 등 방송산업 전반의 진흥정책(허가·등록 등 진입규제, 이용약관·요금 승인(신고), 기술규제 등)을 수행하고 있음.

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공공성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매체(지상파방송, 종편PP, 보도PP 등)를 소관하여 방송사업 전반의 금지

1) 법률 제20676호, 2025.1.21., 제정, 2026.1.22. 시행

행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용심의에 따른 행정처분, 방송프로그램 편성·평가, 방송광고 정책 등을 담당하고 있음.

【과기정통부 및 방통위 소관 방송사업자 현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	지상파방송사업자 (KBS, MBC, SBS, EBS 등)
위성방송사업자(Skylife)	-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LG헬로비전, 티브로드 등)	-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TVN, 낚시채널 등 일반PP, CJ오쇼핑 등 홈쇼핑PP)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jtbc·TV조선 등 종편PP, YTN·연합뉴스 등 보도PP)
IPTV 사업자(KT, SKB, LGU+)	-

자료 : 행정안전부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 분야에서도 사무를 각각 분장하고 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산업 진흥정책과 사전규제를, 방송통신위원회는 사후규제를 담당하고 있음.

【과기정통부 및 방통위 방송·통신 분야 기능 분장】

구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	유료방송, 산업진흥, 사전규제	지상파·보도·종편, 금지행위(사후) 규제
통신	산업진흥, 요금·인허가 등 사전규제	금지행위(사후) 규제

자료 : 행정안전부

이는 방송 및 통신 분야의 경우 국내외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신속한 의사결정,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ies) 산업진흥 측면에서 정책 추진이 필요한 사무 대비 공공성 및 공정성의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사무 등 개개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능조정을 한 것으로 보임.²⁾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복수차관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는데, 1차관은 과학기술 정책을, 2차관은 정보통신기술 정책을 각각 담당하고 있음.

개정안은 그동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는 방송·통신에 관한 사무 중 ‘방송’에 관한 사무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전담하도록 하려는 것인바,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복수차관제 운영의 필요성, 과학기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기적 측면에서 신속한 정책 추진이 요구되는 방송통신 업무의 효율성 및 대국민 서비스 측면에서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지 여부, 방송사무의 기능을 통합하는 것이 효율성을 제고할 수는 있겠으나 상호 견제 및 균형확보의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해 보임.

이에 더하여 개정안을 수용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사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³⁾에서 정하고 있

2) 규제는 규범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충분한 토의와 신중한 의사결정이 중요한 반면, 산업진흥은 경제적 논리를 기반으로 신속한 의사결정과 행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하고, 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 및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규제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위원회의 소관사무) ① 위원회의 소관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방송광고정책, 편성평가정책, 방송진흥기획, 방송정책기획, 지상파방송정책, 방송채널정책에 관한 사항

는바, 해당 법률의 개정이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개정안에 대하여 유관부처의 의견을 정리해 보면,

먼저, 인공지능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는 사항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 관련 사무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 활용·확산, 인재양성 등 여러 기능과 다수 부처가 관련되어 있으므로 단일부처 총괄이 바람직한지, 現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등 합의제 기구 거버넌스 강화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종합적 검토 필요하다는 의견을,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통해 정부의 인공지능 정책을 조율하고 심의·의결하고 있어 특정 부처가 관장하기 보다는 기능과 연관성, 현장접점, 실행력 등을 고려해 부처별 고유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외교부는 국가 AI 역량 결집을 위해 과학기술·외교·산업 등 관계 부처 장관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 차원의 AI 역량 결집과 정책 마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각각 제시하고 있음.

다음, 방송 융합·진흥 사무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는 사항과

2. 조사기획총괄, 방송통신시장조사, 방송통신이용자보호, 시청자 권익증진, 인터넷 윤리,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3. 방송용 주파수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사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해서, 행정안전부는 독임제 또는 합의제 기관 중 어디에서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종합적 검토 필요하다는 의견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 시장 환경과 기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디지털 정책과의 융합 및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현행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각각 제시하는 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주파수와 방송·통신의 융합·진흥을 위한 주파수 관리 등을 위해 전파관리에 관한 사무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2.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지부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려는 것
임(안 제12조, 제19조 및 제22조).

현행	개정안
제12조(국무회의) ① (생략)	제12조(국무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u>부총리 및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u>	② ----- ----- ----- ----- ----- ----- ----- <u>부총리, 과학기술정보통신 인공지능부장관이 겸임하는 부 총리 및</u> -----.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부총리) ①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총리 <u>2명</u> 을 둔다.	제19조(부총리) ① ----- ----- ----- <u>3명</u> 을-----.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부총리는 <u>기획재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각각</u> 겸임한다.	③ ----- <u>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 신인공지능부장관이</u> -----.

현행	개정안
④ · ⑤ (생략) <신설> 제22조(국무총리의 직무대행)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u>부총리의</u>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고,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u>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u> <u>부장관은 과학 및 기술 정책에</u> <u>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u> <u>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u> <u>정한다.</u> 제22조(국무총리의 직무대행) -- ----- ----- ----- -----<u>부총리,</u> <u>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장</u> <u>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u>----- ----- ----- ----- ----- -----.

부총리제는 대통령 → 국무총리 → 행정각부로 구성된 헌법 체계에서 예외적인 사항으로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 제19조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고, 이외에도 부총리는 국무총리 사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하고 국무회의 의장과 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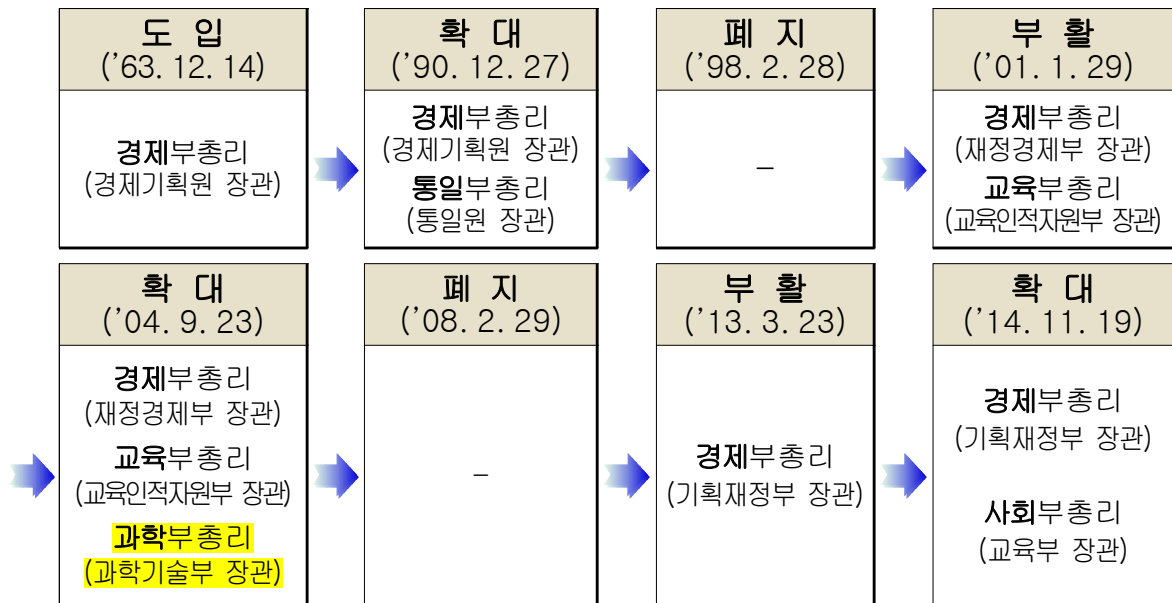
장이 동시에 사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하는 역할을 담당함.

현행법상 부총리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사회부총리가 있는데, 이들은 각기 경제정책과 교육·사회 및 문화정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부총리제 연혁을 살펴보면, 1963년 경제기획원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한 것을 시작으로, 1990년 부총리를 2인으로 확대하면서 통일원장관이 겸임하는 통일부총리가 신설됨으로써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의 기획·운영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각부를 통괄·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 바 있음. 1998년 부총리제는 전면 폐지되었다가,⁴⁾ 2001년 재정경제부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교육부총리를 겸임하게 함으로써 부총리제는 부활하였고, 2004년 9월 과학기술부장관이 과기부총리를 겸임하여 3인 부총리 체제로 확대됨. 그러나 2008년 부총리제는 폐지된 후 2013년 기획재정부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하게 됨으로써 부활하였고, 2014년 2인 부총리 체제로써 오늘에 이르고 있음.

4) 「정부조직법」 개정, 1998.2.28.

【부총리제 연혁】



자료 : 행정안전부

한편, 과학기술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접근과 관련된 현행 기구 및 역할을 살펴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등 사무를 관장하고 있고⁵⁾⁶⁾,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5) 「정부조직법」 제29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호·정보문화,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6) 「과학기술기초법」 제7조(과학기술기본계획)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반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과학기술 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과학기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제7조의2(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2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 단위의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이하 “중장기투자전략”이라 한다)을 세우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제12조(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이하 “평가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과학기술 발전 전략 및 주요 정책 방향 등을 자문하고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 등을 심의하며,⁷⁾⁸⁾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제12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등) ①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다음다음 연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매년 10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 예정된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중기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투자의 방향과 기준을 매년 3월 15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해당 기관의 예산요구서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와 연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사업별 투자우선순위

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방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내역

3의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하는 예산의 배분·조정 내역

4.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의 조정 및 연계

5.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적정성, 중점추진방향 및 개선방향

6. 다수 부처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부처별 역할 분담

7. 기초연구와 지방과학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대한민국헌법」 제127조 ①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③ 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8)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의 혁신 등을 위하여 헌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설치하고, 그 조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헌법 제1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자문기능

가. 국가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위한 과학기술 발전 전략 및 주요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나. 국가과학기술 분야의 제도 개선 및 정책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이 과학기술자문회의에 부치는 사항

서는 과학기술혁신 정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범부처 협력과제·중장기이슈 발굴 및 부처 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고 있음.⁹⁾

또한, 인공지능 분야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

2. 과학기술 주요 정책·과학기술혁신 등에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심의 기능

가.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나.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 과학기술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다.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다음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라. 과학기술 관련 예산의 확대방안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권고에 관한 사항

마. 매년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이하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예산의 배분 및 조정과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바. 중·장기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육성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자. 성장동력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차. 문화·관광산업, 부품소재 및 공정혁신 분야 등에서의 과학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카. 과학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타. 지역기술혁신정책의 추진을 위한 지원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파. 기술혁신을 위한 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하. 국가표준 및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

거. 과학기술을 활용한 경제적·사회적 문제의 해결에 관한 사항

너.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러. 과학기술분야 연구 안전환경의 조성에 관한 사항

머.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제5조에 따른 심의회의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서. 그 밖에 제5조에 따른 심의회의의 업무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9)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대통령훈령)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 과학기술혁신 분야의 중요 정책 조정과 주요 현안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국가 과학기술혁신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의회가 필요한 현안사항 및 주요 정책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여 과학기술에 기반한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국가 과학기술혁신 분야의 동향 점검 및 정책 발전방향 설정 등 과학기술혁신 정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국가 과학기술혁신 체계 고도화를 위한 범부처 협력과제 및 중장기 이슈 발굴과 관련한 사항

3. 국가 과학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처 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하는 국가 과학기술혁신 분야에 관한 안전 및 보고사항

한 기본법」에 따른 대통령 직속의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출범 (2024.9.26.)하여 인공지능 연구개발·투자 전략 수립, 산업·공공 부문 인공지능 활용 및 사회변화 대응, 관련 인력양성 및 신뢰 기반 조성, 인공지능 관련 국제협력 등 인공지능 정책 전반의 심의·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¹⁰⁾

그러나 연구개발, 원천기술, 및 인공지능은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원이 이뤄질 필요가 있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제부흥을 위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처간 협업 시스템을 강화하여 해당 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¹¹⁾

이에 개정안은 과학 및 기술 정책에 부총리제를 도입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장관에게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할 수 있

10)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 2026.1.22.)

제7조(국가인공지능위원회) 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시행의 점검·분석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등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등에 관한 연구개발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등에 관한 투자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산업 발전과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의 발굴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센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인프라 확충 방안에 관한 사항
7. 제조업·서비스업 등 산업부문 및 공공부문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8. 인공지능 국제규범 마련 등 인공지능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제2항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에 관한 사항
10. 고령화 인공지능 규율에 관한 사항
11. 고령화 인공지능과 관련된 사회적 변화 양상과 정책적 대응에 관한 사항
1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1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11) "부처별로 분산된 인공지능(AI)·데이터 정책 심의조정 기구 필요", 전자신문, 2020.12.13.,

는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범국가 차원에서 과학기술정책의 위상 및 기획·조정 능력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투자여건을 조성하는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취지로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임.

다만, 과학 및 기술 정책 분야의 부총리를 설치할 경우, 부총리는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사이에 또 하나의 계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무총리가 의장이 되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와 역할 충돌 우려 측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이에 더하여 인공지능 정책의 경우 현재 대통령이 의장이 되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¹²⁾가 운영된다는 점에서 별도로 부총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개정안에 대하여 유관 부처의 의견을 살펴보면, 행정안전부는 과거 과학기술부총리를 운영하였으나 폐지된 바 있고, 국무총리·경제부총리와의 기능 중복 및 현행 수행체계 상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부터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운영하여 과학기술정책의 총괄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도모해왔다는 측면에서 개정 입법의 실익은 낮을 수 있다는 의견을 각각 제시함.

12)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조(구성) ②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3. 차관급 우정청 신설

개정안은 현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우정사업본부를 차관급 ‘우정청’으로 격상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제4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9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호·정보문화, <u>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u>, 정보통신산업, <u>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u>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u>과학기술정보통신부</u>에 과학기술혁신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u><신설></u> <u><신설></u>	제29조(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 ① <u>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장관</u>----- ----- ----- ----- ----- -----<u>인공지능 진흥 및 산업, 통신·인공지능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u>----- -----. ② <u>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u>----- ----- -----. ③ <u>우정사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장관 소속으로 우정청을 둔다.</u> ④ <u>우정청에 청장 1명과 차장</u>

현행	개정안
	<u>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u>

우정사업본부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우정사업조직¹³⁾으로, 우정사업은 우
편, 우편환, 우편대체, 우체국예금, 우체국보험 등의 사업¹⁴⁾을 말하며,

13)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우정사업조직”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관 사무 중 우정사업을 나누어 맡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우정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이하 “우정사업총괄기관”이라 한다)과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우정사업본부 직제」 제2조(직무)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우정사업 조직으로 우정사업본부를 두며,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물의 접수·운송·배달 등 우편사업과 우체국예금·우체국보험 등 우체국금융사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4)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정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우편 나. 우편환 다. 우편대체 라. 우체국예금 마. 우체국보험

바.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수입인지의 판매

사.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른 외국환업무

아.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른 전자자금이체업무, 직불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전자지급결제대행 등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차.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생략)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부대사업의 범위)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차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우체국 전산망 및 이에 연계되는 전산망을 활용한 부가통신사업 및 정보처리업

2. 우편망을 이용한 소화물일관운송업·창고업·통관업·통신판매 및 시장조사업

3. 우정사업과 관련된 물품의 판매업

4. 우표류·우편물·우체국시설 및 장비를 이용한 광고업

5. 우체국사(郵便局舎) 및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임대업

6. 우정사업 자원을 이용한 불우이웃 지원 등 공익사업

7. 다른 행정기관이나 타인으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

8. 그 밖에 우정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

동 사업들은 우편사업(우편물의 접수·운송·배달 등)과 우체국금융사업(우체국예금, 우체국보험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¹⁵⁾.

우정사업본부는 1948년 체신부 우정국 및 보험국으로 업무를 시작한 이후 1994년 정보통신부 신설로 소관 부처 명칭이 변경되었고, 2000년 정보통신부 소속으로 우정사업본부가 설치된 이후 지식경제부,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그 소속이 변경된 바 있음.

【우정사업본부 연혁】

- 1948. 07. : 체신부 우정국·보험국
- 1977. 01. : 체신부 우정국
 - ※예금·보험업무를 농협으로 이관
- 1982. 12. : 체신부 우정국·체신금융국
 - ※ 예금·보험업무를 체신부로 재이관
- 1994. 12. : 정보통신부 우정국·체신금융국
- 2000. 07. : 정보통신부 소속 우정사업본부
- 2008. 02. : 지식경제부 소속 우정사업본부
- 2013. 03. :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우정사업본부
- 2017. 0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우정사업본부

자료 : 행정안전부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제공 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는 사업

「우정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대사업 고시」(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조(부대사업의 지정) 시행령 제2조 제8호에 따른 “그 밖에 우정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우편물(전자문서 중 「우편법」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서신 등 의사전달물을 포함한다)의 전자적 형태 처리(작성, 송신, 수신, 중계, 저장(보관), 전자거래 등)
- 15) 우편환과 우편대체는 우정사업본부 예금사업과 소관임.

「우편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우편환”이란 우체국에서 발행하는 우편환증서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격지자 간의 송금수단을 말한다.

「우편대체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편대체”란 이 법에 따라 체신관서에서 취급하는 납입·지급 및 이체를 말한다.
- 2.~8. (생략)

현재 우정사업본부는 본부가 1실, 3단, 8담당관, 18과로 구성되고, 3개 직할 관서가 있으며, 지방조직으로 9개 지방우정청 및 3,300여 개 우체국이 있고, 소속 인원은 약 3만 3천여 명임. 이와 관련하여 다른 ‘청’ 단위 기구들과 비교할 때 현행과 같이 ‘본부’ 조직으로 두는 것이 조직 규모에 부합하지 않고, 이메일과 SNS 이용 등으로 인한 우편 수요의 구조적 감소에 대한 대응 및 우정사업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전국적으로 갖춰진 우정조직을 활용한 새로운 역할로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우정사업본부를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진 조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¹⁶⁾.

【우정사업본부 기구 및 정원 현황】

○ 기구 : 본부 1실, 3단, 8담당관, 18과 / 직할관서 3개 / 지방우정청 9청 / 우체국 3,367국



직할(3) : 우정인재개발원, 우정정보관리원, 우정사업조달센터

*지방우정청(9) : 서울, 경인, 부산, 충청, 전남, 경북, 전북, 강원, 제주

16) 우정청 승격 정책 토론회 자료집, “왜 우정청이어야 하는가?: 우정사업의 지속 가능 및 공적 역할 강화”, 주최: 국회의원 박찬대, 주관: 전국우정노동조합, 2022. p.12.

○ 정원 현황

(2024.12. 기준, 단위: 명)

구분	계	고공단	3·4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연구직	전문 경력관
계	33,068	15	15	154	52	626	6,311	6,513	9,399	9,964	10	9

자료 : 행정안전부

개정안은 우정조직의 인적·물적 규모 등을 고려하여 우정사업본부를 과학기술인공지능정보통신부장관 소속 외청인 ‘우정청’으로 승격하여, 인사 및 조직운영의 자율성과 다른 행정부처와 협의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우정사업의 보편적 우편역무 제공¹⁷⁾과 함께 새로운 공적 역할¹⁸⁾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취지로 보임.

다만, 우정사업을 공사 또는 민영회사 체제로 운영¹⁹⁾하는 해외사례

17) 「우편법」 제14조(보편적 우편역무의 제공)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국에 걸쳐 효율적인 우편송달에 관한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어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적정한 요금으로 우편물을 보내고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우편역무(이하 “보편적 우편역무”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편적 우편역무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킬로그램 이하의 통상우편물
2. 20킬로그램 이하의 소포우편물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우편물의 기록취급 등 특수취급우편물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편물

18) 우정사업의 새로운 공적 역할과 관련하여, 손승현 우정사업본부장은 “과거 보편적 서비스인 우편사업을 위해 촘촘한 전국망을 구축했다면, 이제는 생활 복지와 사회안전망 강화 등 현시대가 요구하는 공적 역할에 우정사업본부의 전국 네트워크 역량을 활용하겠다는 비전”으로 설명하고 있음. 그 예로 2018년 6월 ‘라돈’ 매트리스가 사회적 문제가 되던 당시 우체국 직원들이 이틀 만에 전국에서 2만 2,000여개의 라돈 매트리스를 수거한 사례, 2020년 초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대란’이 발생했던 당시 우체국이 공적마스크 판매를 담당한 사례, 2020년 2월 코로나 확진자 폭증 당시 우체국이 전국 보건소와 협업해 ‘재택치료키트’를 배송한 사례 등을 들고 있으며, 또한 행정안전부와 함께 임신 지원 용품을 수요자에 배달하는 ‘맘편한 임신서비스’를, 여러 지자체와 함께 홀몸 어르신에게 복지사업 안내 정보 등을 등기로 배송하면서 집배원이 직접 건강과 안부 등을 확인하는 ‘복지등기’ 서비스를 시행 중이라고 밝히고 있음. (“전국 ‘라스트 마일’로 우체국 복지 실현...‘청’ 승격 열망”, [인터뷰]손승현 우정사업본부장, 머니투데이, 2022.5.2.)

19) 이와 관련하여 우정노조는 재정, 서비스 부실로 민영화했던 해외 우정의 요금 인상, 적자 심화

들이 있고, 우정사업의 공공서비스 강화 필요성에는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독립적 의사결정 기구화에 대해서는 기구의 형태와 시기, 방법 등에 관한 다양한 연구결과²⁰⁾도 있으므로, 각 방안의 장단점 등을 고려하여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OECD 회원국(34개) 운영체제】

(2025.6.11. 기준)

구 분	우편·금융서비스 겸업(개)			우편서비스만 제공(13개)
	①직영(5개)	②자회사(8개)	③수탁판매(12개)	
정부조직 (2개)	한국			미국
④공사 (정부소유 주식회사, 30개)	터키, 룩셈부르크, 아일랜드1)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일본, 폴란드, 스위스,	체코, 호주,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4), 스페인, 에스토니아, 벨기에5), 캐나다6), 헝가리7), 콜롬비아11)	칠레, 핀란드, 아이슬란드, 멕시코, 덴마크8), 노르웨이9), 스웨덴, 뉴질랜드10), 리투아니아, 코스타리카, 라트비아12)
⑤민영회사 (6개)	포르투갈	오스트리아2), 이스라엘3)	영국, 독일	네덜란드

주 1. (아일랜드) 아일랜드의 An Post는 '17년 An Post Smart Current Account 서비스를 시작으로, '19년에는 An Post Money 서비스를 직접 운영 및 제공하고 있음

등 부작용 고려 시 성공사례로 보기 어려우며, 공공성 측면에서도 부정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음.(우정청 승격 정책 토론회 자료집, “왜 우정청이어야 하는가?: 우정사업의 지속 가능 및 공적 역할 강화”, 주최: 국회의원 박찬대, 주관: 전국우정노동조합, 2022. p.12. 참고)

20) 우정사업의 바람직한 미래상에 대하여, 자율적·독자적 의사결정체계 구축 및 독립성(기획/예산)이 강화된 조직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민영화로 서비스 품질 경쟁력 제고 및 인프라 활용 극대화 방향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완결적 책임행정/경영을 위해 공사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 본연의 기능과 공익성을 기초로 소관부처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음.

이에 대해 한국능률협회는 외부 전문가들은 대부분 독립적 의사결정 기구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공감하나, 기구의 형태와 시기, 방법 등에 대해서는 다소 다양한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음.

(박상우(한국능률협회), “우정사업 공적 역할 강화를 위한 발전 방안”, 우정사업 발전 방안 정책토론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사단법인 선진우정포럼 개최, 2022, p.37. 참고)

2. (오스트리아) Post AG는 '20년도부터 보험회사 GRAWE GRUPPE AG와 합작하여 금융회사 bank99를 설립해 예금 및 보험 서비스 제공 중이며, 타 금융사와 협력하여 우체국 창구를 통해 해당 금융사의 상품 판매 및 상담을 지원하고 있음
 3. (이스라엘) Israel Post는 '24년 11월 민영화해 공공서비스 기업 Milgam Ltd에 매각됨
 4. (슬로베니아) Pošta Slovenije는 '16년에 보유하고 있던 Poštnabanka Slovenije를 Nova KBM에 매각했고, 이후 우체국 창구를 통해 Nova KBM의 은행 서비스를 제공 중
 5. (벨기에) bpost는 '24년 1월부로 bpost bank 지분을 BNP Paribas Fortis에 모두 매각하게 되면서 우체국에서 BNP Paribas Fortis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
 6. (캐나다) Canada Post는 '25년 3월 캐나다 핀테크 회사 KOHO와 협력하여 Canada Post MyMoney Account라는 이름으로 계좌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는데, 실제적인 계좌 및 관련 금융서비스는 KOHO에서 제공하며, 엄밀히 말하면 수탁판매 형식이 아닌 파트너십 형태의 서비스이나, 우체국 창구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7. (헝가리) 헝가리 우정은 '03년에 Posta Bank 지분을 Erste Bank에 모두 매각했으며, 현재는 창구에서 Erste Bank, Takarekbank, FHB Bank의 서비스를 제공 중
 8. (덴마크) 우편 서비스 업체인 PostNord는 '25년 말까지만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을 종료할 계획임(소포사업만 제공 예정)
 9. (노르웨이) '20년 9월 1일부로 은행 서비스 종료
 10. (뉴질랜드) NZ Post는 소유하던 Kiwibank의 남은 지분을 '22년 뉴질랜드 정부에 모두 매각하게 되면서 우체국 창구에서 더 이상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
 11. (콜롬비아) 콜롬비아의 우정사업자 Servicios Postales Nacionales는 콜롬비아 최대 상업은행 Bancolombia와 협력하여 우체국 지점에서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12. (라트비아) 라트비아의 Latvijas Pasts는 별도 금융 자회사를 소유하거나, 다른 은행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나, 우편 결제 계좌(Postal Settlement System)를 제공하여 송금 및 타행으로부터 입금만 가능한 단순 결제 계좌만 제공하고 있음
- 자료: 행정안전부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무 중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우정청으로 이관하고 있는데, 개정안을 수용할 경우 우정사업에 관한 사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장 또는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우편법」, 「우편환법」 등 관련 규정들에 대해서도 개정의 필요성이 있어 보임.²¹⁾²²⁾

21) 「우편법」 제2조(경영주체와 사업의 독점 등) ① 우편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장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사업의 일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우편환법」 제3조(경영주체) 우편환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장한다.

「우편대체법」 제2조(관리) 우편대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리한다.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우체국예금·보험사업의 관장) 우체국예금사업과 우체국보험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장(管掌)한다.

22) 우정사업 관련 사무 관장의 조정 외에, 우정사업운영위원회와 관련된 사항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우정사업

참고로, 비용추계서는 우정청 신설 시 2026년 5억 7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25억 5,600만원이 소요될 수 있을 것으로 추계함.²³⁾

문 의 처
02)6788-5339

의 체계적·효율적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④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우정사업총괄기관에 소속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우정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⑤ 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경영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경영실적평가 및 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우정사업의 재정계획에 관한 사항
4. 예비비의 사용 및 수입금 마련 지출에 관한 사항
5. 우편요금, 우편환요금 및 우정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수수료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제17조에 따른 우정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
7. 제18조의2에 따른 출자등에 관한 사항
8. 우정사업 관련 국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중요 사항
9.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예금 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10.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따른 우체국보험적립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11. 우정사업 중 금융 부문의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끼치는 사항
12. 그 밖에 우정사업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23)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